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88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이해식・민병덕・박정현

조정식 • 복기왕 • 염태영

정준호 · 서미화 · 민형배

김우영 · 김성회 · 차지호

남인순 의원(13인)

제안이유

2004년 정치관계법(일명 오세훈 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지역정당 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정치 규제가 고도화되었고 시민 정치의식이 향상되어 과거 지구당의 폐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낮고, 정당에 대한 폭발적인 시민참 여로 당내 민주주의가 상당수준 정착되어 내부통제가 기능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

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 성과 책임성을 증대시켜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한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중앙당의수도 소재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 나. 법정시·도당수를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1천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 다.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 정당원수는 5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 라.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기보고하는 당원수를 기준으로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별로 각각 당원 1천명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0조제1항).
- 마. 지방자치단체(자치구·시·군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지방의회 청사내 사무실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로 함(안 제36조의3 신설).

- 바.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 사. 정당등록 취소 사유 중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로 완화함(안 제44조제1항제3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을 "중앙당"으로,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를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이하 "지역당"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로 한다.

제6조 중 "100명 이상의"를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이상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도당의 창당승인)"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
- 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제13조의 제목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제 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5 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시·도당 및 지역당의법정당원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천인 이상"을 "500명 이상"으로, "한다"를 "하고, 지역당은 5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단서 및 제4항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과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지역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기보고하는 당원수를 기준으로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별로 각각 당원 1천명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으로 한다.

제5장에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자치구·시·군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지방의회 청사내 사무실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 별"을 "읍·면·동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도당"을 "지역당" 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시·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수 있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2 이상"을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를 "(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승인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47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또는 지역당"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제13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당"을 "지역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의 등록 및 성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및

성립된 정당으로 본다. 다만, 각 정당은 이 법 시행일부터 180일 이 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당의 등록 및 성립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정당은 <u>수도에 소재</u>	제3조(구성) <u>중앙당</u> -
<u>하는 중앙당</u> 과 특별시·광역시	
·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u>	<u>刘·도</u>
<u>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u>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u>으로</u> 구성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으로
제4조(성립) ① (생 략)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	2
정시·도당수) 및 <u>제18조(시·</u>	<u>제18</u> 조(시 •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6조(발기인)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u>100명</u>	<u>100</u> 명
<u>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
	명 이상의
제9조(<u>시·도당의 창당승인</u>) <u>시·</u>	제9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u>
<u>도당</u> 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u>당승인</u>) <u>시·도당 및 지역당</u>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신 설>

<신 설>

- ② · ③ (생 략)
- 제13조(<u>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u>) ①<u>시·도당</u>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14조(변경등록)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하다.
 - 1. ~ 5. (생략)
-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u>5</u> <u>이상</u>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 다.
- 제18조(<u>시·도당의 법정당원수</u>) ①시·도당은 <u>1천인 이상</u>의 당 원을 가져야 <u>한다</u>.

(<u> </u>
-	
]	Ⅰ. ∼ 8. (현행과 같음)
(9. 지역당의 소재지와 명칭
]	10. 지역당의 대표자의 성명ㆍ
	<u> 주소</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13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등</u>
; -	록신청사항) ① <u>시·도당 및 지</u>
(역당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14조(변경등록)
-	제13조(시
_	•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
_	<u>사항)</u>
-	
-	
-	
-	<u>.</u>
]	Ⅰ. ∼ 5. (현행과 같음)
제]	17조(법정시·도당수) <u>2</u>
(이상
-	
제]	18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u>
7	정당워수) ①500명 이상-

----하고, 지역당은 50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 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u>시·도당</u>의 관할구역 안 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19조(합당) ① • ② (생 략)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 음 날에 당해 <u>시·도당</u>은 소멸 된 것으로 본다.

⑤ (생략)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u>시</u> <u>• 도당</u>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

<u>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u> .
②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제19조(합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3
<u>시·도당 및</u>
지역당
<u>시·도당</u>
및 지역당

·
4
<u>시·도당 및 지역</u>
당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 1
<u>\lambda</u>
<u>·도당 및 지역당</u>

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시·도당 및 지역당</u>
<u>시·도당</u>
및 지역당
③ <u>시·도당 및 지역당</u>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하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 (생략)

- 제24조(당원명부) ①<u>시·도당</u>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은 <u>시·도당</u>의 당원 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u>시·도당</u>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 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u>시·도</u>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③ • ④ (생 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u>시·도당 및</u>
	지역당
(④ (현행과 같음)
제:	24조(당원명부) ① <u>시·도당 및</u>
-	지역당
(② <u>시·도당 및 지역당</u>
	<u>시·도당</u>
	또는 지역당
	시 • 도
	당 또는 지역당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	25조(탈당) ①

소속 <u>시·도당</u>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u>시·도당</u>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u>시</u> <u>·도당</u>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 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 하고, 해당 <u>시·도당</u>에 통보하 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 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u>에는 지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 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시·도당 또
는 지역당
<u>.</u>
1. ~ 3. (현행과 같음)
2
<u>\]</u>
<u>· 도당, 지역당</u>
3
시·도당 및 지역당
4
<u>시·도당 및 지역당</u> -
제26조(탈당원명부) <u>시·도당 및</u>
지역당

제27조의2(입당원서 · 탈당신고서 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도당 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 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 의 기재사항) ① (생 략)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신 설>

③ · ④ (생 략)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 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 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 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제	27	조의2(입다	강원시	- F	탈당신]고/	서
	의	보관	및	폐기) (1) <u>시</u>	도	<u>당</u>
	및	지역대	<u> </u>					-
								-
								_
								_
								-
								-
	2	(현행	과	같음))			
제	283	조(강령	3 5	등의	공기	및	당	헌
	의	기재시	나항	1	(현	행과	같음	-)
	2-							_

- 1. ~ 11. (현행과 같음) 12.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 당의 유급사무직원수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당헌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 하되,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기 보고하는 당원수를 기준으로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별 로 각각 당원 1천명당 1명을

② ~ ④ (생 략)

제35조(정기보고) ①중앙당과 <u>시</u> 조 <u>· 도당</u>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u>시·도당</u>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 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 (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 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u>초과할 수 없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35조(정기보고) ①
<u>시·도당 및 지역당</u>
<u>시·도당</u>
및 지역당
·.
②중앙당과 시·도당 및 지역
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 및 지역
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
③ • ④ (현행과 같음)
에36조의3(지방자치단체 공유재
산의 무상 대부 등) 지방자치
단체(자치구・시・군에 한정한
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
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 략)

③정당은 <u>국회의원지역구 및</u>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u>시·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지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 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 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 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 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의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지방의회 청사내 사무실에 한
정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
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읍 • 면 • 동별</u>
지역당
세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1
<u>하고, 시·도당은 지역별</u>

정책의 개발 · 연구활동을 촉진

② (생략)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 제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 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 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
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44조(등록의 취소) ①
1
제18조(시ㆍ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
· <삭 제>
3
J
1 뒤 시
1천분의
5 이상

때

② (생략)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한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 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 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u>시·도당 및 지역당 창당</u>
<u> 승인의 취소</u>)
<u>시·도당 및 지역당</u>
제47조(해산공고 등)
<u>시·도당 또는 지역당</u>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_		_	
긎	ר	-1	ı
O	- 1	\vdash	-

-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 2. (생략)
-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u>시·</u> <u>도당</u>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 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 ② (생략)

1
제13조(시
•도당 및 지역당의 등록신청
<u>사항)</u>
2. (현행과 같음)
3
<u>지역당</u>
② (현행과 같음)